

第 159 回國會 (定期會)

第 2 次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法案審議第 1 班會議結果報告

受信 : 事務總長

경	조사관	조사관	심의회관	전문의원
재	(인)		박	수

專門委員 직 주 수 (印)

會議日時 1992 . 10 . 27 . ( 火 曜 日 )

10 時 30 分 開議  
12 時 30 分 散會

審 查 된 案 件	審 查 經 過 및 結 果	特 記 事 項
<p>1. 지방자치법</p>	<p>지방자치법 기합의사항 (5개항) 외 미합의사항을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음.</p> <p>가. 합의사항 (17건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조례공포기일연장 (제 19조)</li> <li>2) 지방의회의원의 직접선거규정 신설 (제 26조의 2)</li> <li>3) 지방의원체포·구금의 통지기관 구체 명시 (제 34조의 2)</li> <li>4) 서류제출요구대상의 명시 (제 35조의 2)</li> <li>5) 의회규칙제정권 규정신설 (제 37조의 2)</li> <li>6) 의장불신임의 의결용어통일 (제 49조)</li> <li>7) 기초의회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령 현행 유지 (제 50조)</li> <li>8)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방법 별도 법률 제정조항 삭제 (제 86조)</li> <li>9) 단체장의 사무위임규정개선 (제 95조)</li> <li>10)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기간 연장 (제 98조)</li> <li>11)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기간 명시 (제 99조)</li> </ol>	<p>사회 : 오 탄위원</p> <p>제 3차회의 :</p> <p>10.29 10:00예정</p>

審査된案件	審査經過 및 結果	特記事項
	<p>12)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규칙 현행 유지 (제103조)</p> <p>13) 직속기관설치규정 현행유지 (제104조)</p> <p>14) 특별회계 설치근거보완 (제117조)</p> <p>15)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제출근거명시 (제121조)</p> <p>16) 자금적립을 기금설치로 용어통일(제133조)</p> <p>17) 조합회의 재량범위확대(제151조)</p> <p>나. 미합의사항 (14건)</p> <p>1)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위법용어 (제15조)</p> <p>2) 지방공사 및 공단설립규정삭제여부 (제33조, 제138조)</p> <p>3) 지방의회의결사항추가 (제35조)</p> <p>4) 국정감사위임 및 절차 (제36조)</p> <p>5)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 답변의 의장 및 위원장 승인 (제37조)</p> <p>6) 지방의회 연간총회의일수연장(제41조)</p> <p>7)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의장임명권(제83조)</p> <p>8) 지방자치단체·장 상호간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, 분쟁조정·조정이행 (제140조, 제140조의2, 제146조, 제147조)</p> <p>9)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감사권 폐지 (제158조)</p> <p>10) 지방의회의결의 재의요구와 재소 (제159조)</p> <p>11) 자치단체장선거시기 (부칙제2조)</p>	